

# 육아휴직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살펴보기
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상 관련 규정 총정리!
- 남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점!
- 단체협약·취업규칙의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게 적용돼요. 자세한 문의는 법률원(02-2670-9500)으로!



## 육아휴직

- 임신 중 / 만 8세·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- 6개월 이상 근무 시 반드시 허용
- 1년 이내
- 2회 분할(임신 중 사용은 제외)
- 부부 동시 사용 가능
- 근속기간 포함



## 육아휴직 급여

- 30일 이상 실시 +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시 지급
-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
- 지급액은 통상임금 80% (상한 150, 하한 70만원) (하한 이하 동일)
- 단, 월 지급액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한 번에 지급



## 육아휴직 급여 특례(보너스)

- 공통 : 첫 3개월 사후 지급 제외
- 1 한 자녀에 대한 두번째 휴직자**
  - 3개월까지 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  - 4개월부터 : 통상임금 50% (상한 120만원)
  - 22. 12. 31.까지니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라면 올해 실시하시길!**



##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- 만 8세·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- 6개월 이상 근무 + 대체인력 채용 가능하면 반드시 허용, 거부 시 다른 지원 조치 협의
- 주 15 ~ 35시간 근로
- 1년 이내 (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가능)
- 분할 제한 없음, 1회 3개월 이상
- 근로조건 불리·연장근로 금지



##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- 지급·신청 요건 육아휴직과 동일
- 자세한 지급액 별도 문의

- 2 생후 12개월 이내 동시·순차적 부모 모두 휴직**
  - 1개월 : 각 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원)
  - 2개월 : 각 통상임금 100% (상한 첫달 250, 둘째달 200만원)
  - 3개월 : 각 통상임금 100% (상한 첫달 300, 둘째달 250, 셋째달 200만원)
  - 4개월부터 :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원)
- 3 한부모 노동자**
  - 3개월까지 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  - 4개월부터 :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원)